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강현삼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변경(안 제1조)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조문 삭제(안 제4조제3항)

다. 평가지원반 구성·운영 사항 변경(안 제5조)

라. 운영세칙 신설(안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13442호(2016.1.25.)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 실시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 평가지원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